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
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오중균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오중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1월 28일

발의자 : 김육영, 소형준, 양순임, 오중균,
이호건, 임태근, 정기혁, 정병기,
정윤주

1. 제안이유

성북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의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장기 연임으로 인한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어,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입법·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입법·법률고문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 마련(안 제6조)

나. 띄어쓰기, 맞춤법 등 자구 정비(안 제2조, 제4조~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

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의회사무국

라. 입법예고 : 2026. 2. 2. ~ 2026. 2. 9.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제·개정”을 “제정·개정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및 제2호 중 “자문”을 각각 “자문 응답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성북구의회(이하“의회””를 “성북구의회(이하 “의회””로 하고, 같은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자문”을 각각 “자문 응답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의장(이하“의장””을 “의장(이하 “의장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자문”을 “자문 응답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별지 제1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”으로, “별지 제2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2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임기전이라도”를 “임기 전이라도”로, “해촉할”을 “해촉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자문”을 “자문 응답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입법 및 법률고문”을 “입법·법률고문”으로, “재위촉”을 “한 차례만 연임”으로, “시 까지”를 “시까지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자문요청 등)”을 “(자문의뢰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

항 중 “의뢰 할”을 “의뢰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문을 요청”을 “자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직무)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자치법규의 <u>제·개정</u>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<u>자문</u></p> <p>2.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<u>자문</u></p> <p>3. 서울특별시 <u>성북구의회</u>(이하 “<u>의회</u>”라 한다)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·처리,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사항의 <u>자문</u></p> <p>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<u>자문</u></p> <p>2. 서울특별시 <u>성북구의회 의장</u> (이하“<u>의장</u>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</p> <p>3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입법·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</p>	<p>제2조(직무) ①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제정·개정</u> ----- ----- <u>자문</u> <u>응답</u></p> <p>2. ----- ----- <u>자문</u> <u>응답</u></p> <p>3. ----- <u>성북구의회</u>(이하 “<u>의회</u>”----- ----- ----- <u>자문</u> <u>응답</u>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자문</u> <u>응답</u></p> <p>2. ----- <u>의장</u> (이하 “<u>의장</u>”-----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</p>

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
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조(위촉) ①·② (생략)

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
라 위촉하는 입법·법률고문에
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
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
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
부한다.

제5조(해촉) 의장은 입법·법률고
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6.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
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
장을 초래한 경우
7. (생략)

제6조(임기) 입법 및 법률고문의
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의회운영
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촉할
수 있다, 다만, 법률고문의 경우
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
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
야 한다.

제7조(자문요청 등) ① 의회 의원

자문 응답-----.

제4조(위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 별지 제1호서식-----
----- 별지
제2호서식-----
-----.

제5조(해촉) -----

- 임기 전이라도 -----

--- 해촉할 -----.
1. ~ 5. (현행과 같음)
 6. ----- 자문 응답-----

 7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임기) 입법·법률고문-----

----- 한 차례만
연임-----

----- 시까지 -----
-----.

제7조(자문의뢰 등) ① -----

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자문을 의뢰 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·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.

-- 의뢰할 -----.

② -----

----- 자문-----
-----.